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3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3.

발 의 자:노종면·황정아·윤종군

김윤덕 · 김교흥 · 문금주

소병훈 • 박 정 • 박상혁

조승래 · 허종식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,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, 도서구입비, 공연관람료, 박물관·미술관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"전통시장사용분"을 각각 "전통시장등사용분"으로 한다.

-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전통시장등사용분" 이라 한다) × 100분의 40
  - 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
  - 나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(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 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현행 과 같음) 략)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(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.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(이하 이 항에서 "전통시장등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 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

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 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 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 서 "전통시장사용분"이라 한 다) × 100분의 40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 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

40

 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・제2호 및 제4호의급액의합계액

 나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

- 2. 3. (생략)
- 4.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·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금액은 제외하고,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포함된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항에서 "직불카드등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3 0
- 5.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

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(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
		<u>당</u>	히	는		급(	백-	<u>슨</u>	제	외	한	다	·)
2.	• (	3.	( द्	वे ठ	IJ ī	<u></u>	같	음	.)				
4.	_												
													- <u>전</u>
	통	시:	장.	등/	사-	용.	분.						
										_ス	쉬틀	長入	]장
	등												
_		_											
Э.	_										 ப		
				<u>선</u>	동	<u>시</u>	<u>상</u>	능	<u> </u>	풍	분		

교통이용분,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(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. 이 하 이 항에서 "신용카드사용 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15 6. · 7. (생 략)

③ ~ ⑩ (생 략)

6. •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⑩ (현행과 같음)